

의안번호	2201123
의 퇴 인	신영대의원
회 답 일	2024.08.09.
추계번호	24C1491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의2 (장기등기증의날 지정)	○ 매년 9월 9일을 장기등기증 ¹⁾ 의 날로 함	의무규정
2	안 제32조(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)	○ 국가는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교육급여 2.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업보호 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(제4항) 1. 추모기념공원 조성 2. 추모기념관 설립 3. 그 외 장기등기증자를 추모하고 기념할 수 있는 사업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조의2 (장기등기증의날 지정)	○ 기시행 사업
2	안 제32조(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- 1) 동법 제4조제1호에 따른 “장기등”이란 1. “장기등”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
가. 신장·간장·췌장·심장·폐
나. 말초혈(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·골수·안구
다. 뼈·피부·근육·신경·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·팔 또는 발·다리
라.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·고시한 것
마.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·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- (안 제6조의2) 현행법에 따라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일 간 생명나눔주간 기념행사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, “장기등기증의 날” 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
- 현재 생명나눔주간 행사는 기념식, 축제, 음악회, 지방자치단체 캠페인, 관련 교육 등 기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“장기등기증의 날”을 생명나눔주간 중에 지정하여도 추가적인 기념사업을 개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

[표 1] 현행 생명나눔주간 행사 및 2024년 예산

(단위: 만원)

구분	세부내용	2021년 실적	비고
생명나눔행사	생명나눔 주간행사	4,500	직접수행
	조혈모세포 홍보	3,000	
	K-리그 캠페인	6,200	
	희망의 씨앗 캠페인	6,600	민간경상보조사업
	문화, 예술을 통한 생명나눔 활성화 사업	10,000	
	종교계 행사 연계 홍보	21,100	
	온라인 홍보	8,800	직접수행
생명나눔교육	생명나눔 전문강사 및 청소년 교육	6,800	민간경상보조사업
	예비 의료인 대상 교육	3,700	

자료: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

2. 상세 사유

-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(안 제32조)
- 개정안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추모·예우사업을 확대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확대하려는 추모기념사업의 범위와 사업 대상자 수 등이 정해져야 하지만, 개정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는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

- 개정안은 장기등기증자의 유가족에게 교육급여 지급을 명시하였으나, 현재 교육급여의 대상이 기증자 유가족 중 미성년자의 수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며, 취업보호에 대한 지원 범위를 가정하기 어려움
- 또한, 추모기념관 건립에 필요한 위치 및 부지 확보 여부, 기념관의 건축 규모, 기념관 운영 조직의 규모 등 그 밖의 사업 내용을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곤란함²⁾
- 참고로,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현재 순천만 국가정원 내 「생명나눔 주재정원」을 2018년 7월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, 온라인 기증자 추모관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 중임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

2) 부록의 추모공원 및 기념관 조성사례(행정자치부, 보훈처) 참조

[부록] 추모공원 및 기념관 조성사례

[부표 1] 추모공원 및 기념관 조성사례

(단위: 억원, m²)

소관	시설명	조성 기간(년)	조성비			토지면적 /연면적	주요 건물 등 /조형물
			소계	국비	지자체		
대구시	2.28민주운동 기념회관	'10~'11	100	80	20	1,025 /2,848	기념관(지하1층, 지상4층)
부산시	부산민주공원	'96~'99	160	80	80	20,337 /5,278	민주공원(지하1층, 지상 3층)/민주의 햇불, 추모조형물
광주시	5.18민주화운동 기록관	'11~'14	264	125	139	1,500 /5,450	기록관(지하1층, 지상7층)
제주도	제주4.3 평화공원	'04~'16	712	712	—	395,380 /12,107	평화기념관, 위령제단, 관리사무소/위령탑
대일항쟁기 위원회	일제강제동원 역사관	'08~'14	524.2	433.2	91	74,465 /12,062	전시실, 연구교육시설 /추모탑
민주화보상 위원회	민주화운동 기념공원	'07~'15	465.5	465.5	—	150,128 /7,057	기념(추모)관, 휴게소, 유영봉안소, 열사묘역 /참배조형물
거창사건등 위원회	거창추모공원	'98~'04	193	190	3	162,140 /1,889	위패봉안소, 역사관, 합동묘역/위령탑
	산청·함양 추모공원	'99~'04	136	133	3	84,780 /1,622	위패봉안소, 교육관, 합동묘역/위령탑
노근리사건 위원회	노근리 평화공원	'05~'11	191	191	—	132,240 /3,936	방문자센터, 평화기념관, 교육관, 합동묘역/위령탑
국가보훈처	백범김구 기념관	'99~'02	167	160	7	18,354 /9,683	전시관(지상2층, 컨벤션센터/동상
국가보훈처	안중근의사 기념관	'09~'10	180	146	34	5,772 /3,756	기념관(지하2층, 지상 2층)
국가보훈처	유엔평화 기념관	'10~'14	258	258	—	6,810 /7,999	전시관(지상3층) /전망탑

자료: 행정안전부, 보훈처